

2025 한권으로 끝내는 사회보험법 정오표(2025.01.10. 기준)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44	[적용제외사업] ①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적용제외사업] ①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44 날개	01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물품판매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01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물품판매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60	4.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법 제23조)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령 제25조)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령 제25조의2)	4.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법 제23조)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령 제28조의4) (3) 고령자 고용지원금(령 제28조의5)																				
62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전체내용 수정(본문개정1 파일 참고)																				
6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지원대상</th> <th colspan="2">지원수준 상향조건</th> </tr> </thead> <tbody> <tr> <td>운영비용</td> <td>중 일부</td> <td>사업주가 단독 or 공동</td> <td>1. 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상향조건		운영비용	중 일부	사업주가 단독 or 공동	1. 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지원대상</th> <th colspan="2">지원수준 상향조건</th> </tr> </thead> <tbody> <tr> <td>운영비용</td> <td>중 일부</td> <td>사업주가 단독 or 공동</td> <td>1.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상향조건		운영비용	중 일부	사업주가 단독 or 공동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구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상향조건																			
운영비용	중 일부	사업주가 단독 or 공동	1. 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구분		지원대상	지원수준 상향조건																			
운영비용	중 일부	사업주가 단독 or 공동	1.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6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지원대상훈련</th> <th>지원금(지원수준)</th> </tr> </thead> <tbody> <tr> <td>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시간 이상 시하는 훈련</td> <td></td> </tr> </tbody> </table>	지원대상훈련	지원금(지원수준)	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시간 이상 시하는 훈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지원대상훈련</th> <th>지원금(지원수준)</th> </tr> </thead> <tbody> <tr> <td>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td> <td></td> </tr> </tbody> </table>	지원대상훈련	지원금(지원수준)	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지원대상훈련	지원금(지원수준)																					
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시간 이상 시하는 훈련																						
지원대상훈련	지원금(지원수준)																					
⑤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71	4.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법 제32조)	4.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법 제33조)																				
72	5.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법 제32조)	5.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법 제34조)																				
83	(2) 급여기초일액의 보장 ③ 최저기초일액 : 산정된 기초일액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법 제45조 제4항).	(2) 급여기초일액의 보장 ③ 최저기초일액 :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85	<table border="1"> <tr> <th>종 류</th> <th>요 건</th> <th>지 급 액</th> </tr> <tr> <td>훈련연장급여</td> <td></td> <td></td> </tr> <tr> <td>개발연장급여</td> <td></td> <td></td> </tr> </table>	종 류	요 건	지 급 액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table border="1"> <tr> <th>종 류</th> <th>요 건</th> <th>지 급 액</th> </tr> <tr> <td>훈련연장급여</td> <td></td> <td></td> </tr> <tr> <td>개발연장급여</td> <td></td> <td></td> </tr> </table>	종 류	요 건	지 급 액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종 류	요 건	지 급 액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종 류	요 건	지 급 액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97	제5절 육아휴직급여 등 I 육아휴직급여 등			전체내용 수정(본문개정2 파일 참고)																				
115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 으로서 퀵서비스업자..																				
139	II 용어의 정의(법 제5조) ④ 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98 기대할 수..			II 용어의 정의(법 제5조) ④ 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98 기대할 수..																				
142	V 보험의 관장 및 운영에 이어 VI.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법 제9조의2) 내용 추가			VI.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법 제9조의2)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1	6. 요양급여 범위 확인(법 제41조의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양급여의 범위에서...			6. 요양급여 범위 확인(법 제41조의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161	(3) 의료기관 변경요양(법 제48조) 공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를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변경요양(법 제48조) 공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를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191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일반</th> <th>진폐</th> <th>건강손상자녀</th> </tr> <tr> <td>장의비</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분	일반	진폐	건강손상자녀	장의비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일반</th> <th>진폐</th> <th>건강손상자녀</th> </tr> <tr> <td>장례비</td> <td></td> <td></td> <td></td> </tr> </table>	구분	일반	진폐	건강손상자녀	장례비							
구분	일반	진폐	건강손상자녀																					
장의비																								
구분	일반	진폐	건강손상자녀																					
장례비																								
202 날개	19) 업무상질병은 해당 없음			19) 업무상질병은 해당 없음																				
232	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법 제53조의2)			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법 제63조의2)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276 날개	05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 ▶ 무관후보생은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다.	05 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 ▶ 군간부후보생 은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다.
281	④ 회의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기회의는 매년 2회...	④ 회의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 는 매년 2회...
294	3. 수급권의 보호(법 제58조)	3. 수급권의 보호(법 제59조)
300	(2) 보험료 납부의무와 연대책임 2.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2) 보험료 납부의무와 연대책임 2.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가입자
345	Tip 박스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 터 9월 30일까지1.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Tip 박스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 터 9월 30일까지1. 해당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